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판매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286, 2022.05.23

질 의

- 질의법인과 편의점 본사간 약정에 따라, 고객이 질의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담배기기 할인쿠폰으로 편의점에서 할인 구매(쟁점할인)시 질의법인이 편의점에 할인쿠폰 상당액을 지급(보전)하는 경우
 - ① 쟁점할인액이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② 쟁점할인액이 질의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

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법인-5494, 2022.02.25

질 의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사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8381, 2022.04.12

질 의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
- * 민법 839의2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전제

질의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1주택(A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령 154㉔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남은 1주택(B주택)의 취득일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질 의

- 아버지(갑)가 소유한 A주택과 아들(을)이 소유한 B주택을 교환에 따라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